

의안
번호

658

【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8. 11. 21(금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8. 11. 21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8. 12. 15(월)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(2008.9.29)에 따른 상위 법령 변경과 인용조문의 정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교통부 ⇒ 국토해양부(안 제6조제3호)
- 나. 임대주택사업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을 삭제 (안 제9조)
- 다. 주거용 부동산 ⇒ 주택(안 제14조)
- 라. 유통산업지원 ⇒ 물류산업지원(안 제18조)
「화물유통촉진법」 이 ⇒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으로 변경

4. 관련법규

- 「지방세법」 제3조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
-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표준안(2008. 9. 29)지침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 10. 20 ~ 11. 10)

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과 인용조문의 정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
-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